학교장(례) 규정

제정 2023. 11. 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 학교장(례)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례대상자)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고인의 유족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장례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
- 2. 현직 교.직원으로서 현저한 기여를 하거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교.직원
- 3. 기타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

제3조(장례위원회의 설치)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

- 1.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3.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팀에서 주관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 단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.

- 1. 영결식의 일시, 장소 및 진행에 관한 사항
- 2. 장례 집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장례 및 추모 절차에 관한 사항

제6조(조의) ① 학교장 기간동안 대학 구성원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 발인 당일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부담) ① 학교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학이 부담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